

2026. 6. 9.

수 신: 의 장

제 목: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제안합니다.

첨 부: 서명부 및 조례안 각 1부. 끝.

의원서명부

종로구의회

성명	서명
이광규	이광규
이륜구	이륜구
여봉무	여봉무
이시훈	이시훈
김하영	김하영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 운영위원회 제안)

의안 번호	3442
----------	------

제안연월일: 2026. 6. 9.

제안자: 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 이유

현행 회의 규칙의 운영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한 일부 조문을 보완하고, 의장·부의장 선거시 후보자 등록 후 사퇴 절차를 마련하며, 종로구의회 의원 정수가 11명에서 10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본회의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정족수와 발의요건을 비율 기준(분수식 표기)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전원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등 회의 운영의 명확성과 법적 정합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의원의 청가 및 결석 관련 문구를 정비하고, 청가서 및 결석계 서식을 신설함(안 제4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별지 제5호·제6호서식)
- 나. 의장·부의장 선거 후보자 사퇴 절차를 신설하고, 후보자 사퇴신청서 서식을 마련함(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 별지 제2호의2서식)
- 다. 5분 자유발언 신청기한을 본회의 시작 2시간 전에서 본회의 개의일 전날 오후 6시까지로 조정함(안 제35조제3항)
- 라. 「지방자치법」상 기록표결 원칙에 맞추어 표결방법, 표결 참가 시점 및 투표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9조, 제41조, 제43조 및 제44조)

마. 전원위원회 규정을 삭제함(안 제68조)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충분히 심의·의결할 수 있고, 필요시 의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쟁점을 조율할 수 있어 전원위원회 운영의 실익이 크지 않고, 또한 「국회법」은 제63조의2에서 전원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별도로 두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법」 제64조는 지방의회 위원회의 종류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만 규정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도 같은 취지에서 지방의회는 조례로 전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법적 정합성과 회의규칙 체계의 명확성을 위하여 전원위원회 규정을 삭제.

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인용조문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로 정비하고, 위원 제척 관련 문구를 명확히 함(안 제92조제1항 및 제4항)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1) 「지방자치법」 : 제51조, 제57조, 제64조, 제66조, 제72조, 제74조, 제76조, 제83조, 제98조 및 제99조
-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 제9조, 제16조의2 및 제48조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해당 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의원의 청가서 제출 등)”을“(청가 및 결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를 “청가기간이 지나도”로, “하고 청가의 기간 안”을 “하고, 청가기간 중”으로, “그 효력을”을 “효력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원의”를 “의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의”를 “제2항에 따른”으로, “하되”를 “하되,”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청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결석계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 제목“(후보자 등록)”을“(후보자 등록 및 사퇴)”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후보자 등록이 확정된 의원이 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거일 본회의 시작 1시간 전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회 선거 후보자 사퇴 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 사퇴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의장은 선거 당일 본회의에서 접수된 사실을 의원들에게 구두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경과할 때까지 4명 이상 출석”을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

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로 한다.

제13조 전단 중 “3명”을 “4분의 1”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의안의 제출·발의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다.

제22조제1항 중 “3명”을 “4분의 1”로 한다.

제3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날(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의 평일) 오후 6시까지 그 발언 취지를 적은 신청서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언 순서는 발언 신청 순서를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기록표결) 본회의에서 표결은 법 제74조에 따라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1조 단서를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포하기 전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기명투표, 호명투표 또는 그 밖에 투표자와 찬성·반대·기권 의원의 성명이 회의록에 기록되는 방법으로 표

결할 수 있다.

제4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③ 제39조 단서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제43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4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기명투표”를 각각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투표”로 하고, 같은 항 전단 중 “기명투표·무기명투표”를 “투표의 수와 명패”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위원 2명”을 “재적위원 3분의 1”로 한다.

제68조를 삭제한다.

제70조 중 “1의”를 “1 이상의”로 한다.

제74조제1항 후단 중 “2명”을 “5분의 1”로 한다.

제88조제3항 본문 중 “4명”을 “3분의 1”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필요하지”를 “필요로 하지”로 한다.

제92조제1항 중 “의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49조및제50

조”를 “의회는 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위원은 다음”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 가 서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가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2. 사 유 :

3. 연 락 처

- 주 소 :

- 전 화 :

20 년 월 일

소속위원회 :

제 출 의 원 :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의원의 청가서 제출 등) ① 의원이 <u>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u>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 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u>하고</u> 청 가의 기간 안에 의회에 출석할 때 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u>그 효력</u> 을 상실한다.</p> <p>②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 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 는 위원장은 해당 <u>의원의</u>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③ <u>제2항의</u>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 되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p> <p>제5조(후보자 등록) ① ~ ④ (생 략)</p> <p><u><신 설></u></p>	<p>제4조(청가 및 결석) ① ----- - <u>청가기간이 지나도</u> ----- ----- ----- <u>하고, 청가기간 중</u>----- ----- ----- <u>효력을</u>-----.</p> <p>② ----- ----- ----- - <u>의원에게</u> -----.</p> <p>③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u>조례</u>」 제9조에 따른 청가서는 별 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결석계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p> <p>④ <u>제2항에 따른</u> ----- 하 되, ----- -----.</p> <p>제5조(후보자 등록 및 사퇴)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후보자 등록이 확정된 의원이</u> <u>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u> <u>당 선거일 본회의 시작 1시간 전</u> <u>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회</u></p>

<신 설>

제11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략)

② 의장은 제8조에 따른 개의 시간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4명 이상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13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3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6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선거 후보자 사퇴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 사퇴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의장은 선거 당일 본회의에서 접수된 사실을 의원들에게 구두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
-----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의사일정의 변경) -----
4분의 1 -----

-----.

제16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안의 제출·발의에 관하여는 「서울

상임·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3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발의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②·③ (생략)

제22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3명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35조(5분 자유발언) ①·② (생략)

③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본회의 시작 2시간 전까지 그 발언취지를 의장에게 통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는 발언신청 순서를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39조(기록표결) 본회의에서 표결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기록표결 및 무기명투표(법 제74조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가부

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수정동의) ① -----

----- 4분의 1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5분 자유발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날(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의 평일) 오후 6시까지 그 발언 취지를 적은 신청서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언 순서는 발언 신청 순서를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39조(기록표결) 본회의에서 표결은 법 제74조에 따라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

(可否)를 결정한다.

제41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전자투표를 포함한다)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3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단,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이 의원에게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있을 경우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

한다.

제41조(표결의 참가) -----

----- . 다만, 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포하기 전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3조(표결방법) ① -----

----- . 다만,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기명투표, 호명투표 또는 그 밖에 투표자와 찬성·반대·기권 의원의 성명이 회의록에 기록되는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

<삭 제>

② -----

----- .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결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투표로 한다.

⑤ (생 략)

⑥ 의장은 의원의 동의를 얻어 제2항, 제4항, 제5항까지에 따른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투표절차) ①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②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監票委員)을 지명하고 그 위원들의 참여하에 사무국 직원에게 기명투표·무기명투표의 수를 점검·계산하게 한다. 이때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은 그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

③ 제39조 단서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삭 제>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삭 제>

제44조(투표절차) ①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투표 -----

-----.

②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투표 ---

----- 투표의
수와 명패-----

-----.

다.

③·④ (생략)

제54조(의안의 상정) ① (생략)

②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위원 2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생략)

제68조(전원위원회) ① 의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집행부 조직에 관한 조례안, 재정 또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안 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6명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全院委員會)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주요 의안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단의 동의를 받아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54조(의안의 상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

제61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 재적위원 3분의 1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② 전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 부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한다.

③ 전원위원회는 재적의원 6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전원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장을 준용한다.

제70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를 재적의원 3분의 1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4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발의는 재적의원 2명 이상이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8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② (생략)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필요하지 않으며

제70조(예산안의 수정동의) -----

----- 1 이상의 -----
-----.

제74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

-----.
----- 5분의 1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3분의 1 -----
-----.

----- 필요로
하지 -----

징계사유를 적은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생략)

제92조(구성과 운영) ① 의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조례」 제49조및제5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략)

④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 4. (생략)

-----.

④ (현행과 같음)

제92조(구성과 운영) ① 의회는 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위원은 다음 -----

-----.

1. ~ 4. (현행과 같음)